

「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제 안 설 명

□ 의안번호 제3076호

「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재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
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설치한 임시선별진료소
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세부담이 발생하여,
- 의료기관의 납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감면
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.

□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
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□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2022. 2. 11.

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이 병 한